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9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17. 4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등의 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 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는 임대료 안정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,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여 임대료 안정 및 공공안심상가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 추가(안 제 20조의 2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(2017. 3. 9. ~ 2017. 3. 29.)
- 2) 규제심사: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 ‘별첨’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 제13조제3항제18호”를 “영 제13조제3항”으로, “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”를 “대상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의 각 호의 경우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<u>영 제13조제3항제18호</u>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<u>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20조의2(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) <u>영 제13조제3항</u>----- -----<u>대상은</u> <u>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.</u>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 제18조제2항 각 호의 경우</u></p>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변동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1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일부 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 부분은 없음

4. 작성자

- 성동구 재무과 신연경(연락처 2286-5264)

< 관 계 법 규 >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20조(사용·수익허가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·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 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.

1. 허가의 목적·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2.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·수익을 허가하는 경우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13조(사용·수익허가의 방법)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(隨意)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.

- 1.~19. 생략
20. 그 밖에 행정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

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서

2017. 4. 28.
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7. 4. 10. 성동구청장

나. 회부일자: 2017. 4. 11.

다. 상정일자: 2017. 4. 21.

(제231회 임시회 개최중 제2차 행정재무위원회)

2. 제안개요

가. 제안설명: 기획재정국장

나. 제안이유

젠트리피케이션 피해 구제를 위한 공공안심상가 등의 행정재산 사용·수익 허가 시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하는 일반입찰의 방법으로는 임대료 안정 등의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, 다양한 방법으로 실수요자를 선정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규정하여 임대료 안정 및 공공안심상가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 추가

(안 제20조의 2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

1) 입법예고 (2017. 3. 9. ~ 2017. 3. 29.)

2) 규제심사: 행정규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

3) 부패영향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특기할 사항 없음

5) 신·구조문대비표 ‘별첨’

5.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안심상가에 대한 사용 수익 허가 시,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,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린 임차인과 지역 상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안심상가 설치 취지에 부합하고자 하는 것임

○ 단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제13조 제3항 제20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위치·형태·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·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익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,

○ 공공안심상가 관련 규정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

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
안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사항
으로, 공공안심상가 관련 규정 입법이 선행된 후에 본 개정조례
안을 상정·심사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됨

6. 질의 및 답변: 회의록 참조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, 기권 2인으로 원안가결 하
였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